

제2조 사채의 이율 등

① 사채의 이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1. 고정금리

가. 연()%로 하고 사채의 상환일까지 적용합니다.

나. 약정금리 연()% = () + ()%

다. 기준금리는 사채인수일에 은행이 고시하는 금리이며 사채의 상환일까지 적용합니다.

2. 변동금리

가. 약정금리 = () + ()%

나. 기준금리는 사채인수일에 은행이 고시하는 금리이며 매 () (개월, 년)마다 변경 적용합니다.

②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사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사채의 경우에는 사채인수일 및 금리변경 적용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 CD 91일물의 유통수익률, 금융채(AAA) 3개월물, 금융채(AAA) 6개월물, 금융채(AAA) 1년물의 유통 수익률, KORIBOR 3개월물, KORIBOR 6개월물, KORIBOR 1년물, 단기 COFIX, 잔액 기준 COFIX,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사채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의 변경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가. CD 91일물의 유통수익률은 사채인수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 마다 변경합니다.

③ 제1항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사채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 일물 CD유통수익률, AAA 등급 6 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 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사채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가. 91 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

나. 6 개월물 금융채 또는 1 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 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

다.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

라. LIBOR 1개월물 또는 LIBOR 3개월물 또는 LIBOR 6개월물은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는 금리

④ 제3항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항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p>나. 금융채(AAA) 3개월물, 금융채(AAA) 6개월물, 금융채(AAA) 1년물의 유통수익률은 사채인수일과 그 날로부터 매 3개월, 6개월, 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유통수익률의 단순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 6개월, 1년마다 변경 합니다.</p> <p>다. KORIBOR 3개월물, KORIBOR 6개월물, KORIBOR 1년물은 사채인수일과 그 날로부터 매 3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연합인포맥스가 고시하는 기간별 KORIBOR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변경합니다.</p> <p>라. 단기 COFIX는 사채인수일과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전국 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단기 COFIX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 마다 변경합니다.</p> <p>마. 잔액 기준 COFIX,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사채인수일과 그 날로부터 매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기간별 잔액기준 COFIX, 기간별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12개월마다 변경합니다.</p> <p>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은 사채인수일과 그 날로부터 매 1개월, 3개월, 6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영국 런던 오전 11시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 (Reuters, Telerate,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 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변경합니다.</p> <p>③ 고정금리 사채에 적용하는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자본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상품 중 금리만기일과 일치 하는 대표</p>			
---	--	--	--

적 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하여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1. 원화사채의 경우

가. 금리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 : CALL 금리, CD유통수익률, 금융채(AAA) 유통수익률, 국고채 유통수익률

나. 산출방법 : 사채인수일의 직전영업일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은행,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고시한 금리 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등을 적용하며, 유통수익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보간법 : 기준상품의 시장 유통수익률이 없는 만기구간은 유통수익률이 있는 상하만기 유통수익률에 가중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2. 외화사채의 경우

가. 기간별, 통화별 LIBOR

나. 산출방법 : 사채인수일의 직전영업일 영국 런던 오전 11시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 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 Telerate,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 받은 기간별, 통화별 LIBOR를 적용하며, LIBOR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④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지연배상금률은 제1항의 약정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 % 이내로 적용합니다.

2. 연체기간별 가산율은 연체기간이 () 개월 미만인 경우 연 ()%, () 개월 이상 () 개월 미만인 경우 연()%, () 개월 이상인 경우 연()%를 적용합니다.

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 외화는 360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기준으로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즉시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자납입 지체일수가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4조 인수수수료

- ① 은행은 채무자가 제1조의 발행조건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며, 인수수수료는 인수금액의 ()%로 합니다.
- ② 은행은 사채인수일에 인수수수료를 공제한 사채인수대금 잔액을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 사채권의 반환·교부

- ① 은행이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사채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사채원금을 상환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반환하되 일부 상환시에는 영수증만을 발행하여 교부하기로 합니다.

제9조 사채권의 재교부

- ① 은행이 사채권을 상실하여 제권판결정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는 곧 사채권을 재교부 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사채권의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그 사채권의 재교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는 이의없이 곧 사채권을 재교

출된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적용이율에 연체기간별 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 ()% 이내로 적용합니다.
2. 연체기간별 가산율은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개월 초과인 경우 연 ()%를 적용합니다.

제4조 (사채권의 발행과 교부)

- ① "갑"은 사채발행일에 사채권을 발행하여 사채인수일에 동 사채권을 "을"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사채 인수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사채권의 발행과 인수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 (사채권의 재교부)

- ① "을"이 사채권을 상실한 경우 제권판결문 등본과 그 상실이유를 기재한 사채권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갑"은 30일 이내에 이의없이 재교부 하기로 한다.
- ② "을"이 사채권을 훼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 그 사채권의

연배상금을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적용이율에 연체기간별 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 ()% 이내로 적용합니다.
2. 연체기간별 가산율은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개월 초과인 경우 연 ()%를 적용합니다.

제4조 (사채권의 발행과 교부)

- ① "채무자"는 사채발행일에 사채권을 발행하여 사채인수일에 동 사채권을 "은행"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교부받은 사채권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사채 인수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사채권의 발행과 인수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5조 (사채권의 재교부)

- ① "은행"이 사채권을 상실한 경우 제권판결문 등본과 그 상실이유를 기재한 사채권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없이 재교부 하기로 한다.
- ② "은행"이 사채권을 훼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 그 사채권의

<p>부하기로 합니다.</p> <p>제7조 사채권의 발행</p> <p>① 채무자는 은행이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사채권을 발행하여 은행에 교부하기로 합니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의 번호 2. 회사의 상호 3. 사채의 총액 4. 각 사채의 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9. 사채권자명 10. 사채발행일 11. 발행회사 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2. 권면분할금지 특약 <p>제8조 사채원부 작성</p> <p>채무자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 사채원부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사채원부 사본을 은행에 교부하기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권자(은행)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p>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u>갑</u>"은 30일 이내에 이의 없이 재교부 하기로 한다. 다만, 그 사채권이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바에 따른다.</p> <p>제6조 (사채권의 기재사항)</p> <p>사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의 번호 2. 발행인 상호 3. 사채의 총액 4.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상환 및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7. 채권의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8. 사채 발행일 9.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10. 사채 지급 보증서 <p>제7조 (사채원부 작성)</p> <p>"<u>갑</u>"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하며 사채원부 사본을 "<u>을</u>"에게 교부한다.</p>	<p>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u>채무자</u>"는 30일 이내에 이의 없이 재교부 하기로 한다. 다만, 그 사채권이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바에 따른다.</p> <p>제6조 (사채권의 기재사항)</p> <p>사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권의 번호 2. 발행인 상호 3. 사채의 총액 4.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상환 및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7. 채권의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8. 사채 발행일 9.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10. 사채 지급 보증서 <p>제7조 (사채원부 작성)</p> <p>"<u>채무자</u>"는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하며 사채원부 사본을 "<u>은행</u>"에게 교부한다.</p>	
--	---	--	--

- 3. 사채의 총액
- 4. 각사채의 금액
- 5. 사채의 이율
- 6. 사채의 상환방법 및 기한
-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 8. 각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 9. 채권의 발행연월일
- 10. 각사채의 취득연월일

제11조 사채의 양도

은행은 인수한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보험

채무자는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한 사채인수대금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8조 (사채권의 양도)

- ① "갑"은 "을"이 필요한 경우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 본 계약서의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갑"과 "을"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을"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0조 (담보의 제공)

제 10조 삭제
(인)

- ① "갑"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과의 계약상 채권보전을 위하여 은행등 금융기관이 그 지급을 보증한 약속어음을 "을"에게 제공한다.
- ② 제1항의 약속어음의 보증기한은 당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제8조 (사채권의 양도)

- ① "채무자"는 "은행"이 필요한 경우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 본 계약서의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채무자"와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0조 (담보의 제공)

제 10조 삭제
(인)

- ① "채무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은행"과의 계약상 채권보전을 위하여 은행등 금융기관이 그 지급을 보증한 약속어음을 "은행"에게 제공한다.
- ② 제1항의 약속어음의 보증기한은 당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p>제17조 자료의 제출 등</p> <p>① 채무자는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p> <p>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p> <p>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p> <p>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 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p> <p>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p> <p>② 채무자는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p>	<p>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본건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u>갑</u>"은 당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제1항 소정의 약속어음을 새로이 제공 하여야 한다.</p> <p>③ 사채권면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어음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그 보증기한은 당해 사채권의 지급기일까지로 한다.</p> <p>④ "<u>갑</u>"은 사채상환기일에 이르기까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계속적인 담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u>갑</u>"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u>을</u>"은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1조 (재무제표의 제출)</p> <p>"<u>갑</u>"은 매 결산일 후 2개월내에 그 영업년도에 관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기타 부속명세서)를 "<u>을</u>"에 제출하며 영업년도중이라도 "<u>을</u>"의 청구가 있을시에는 "<u>을</u>"이 요청하는 달의 월말현재 시산표 등 "<u>갑</u>"의 재무, 손익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로한다.</p>	<p>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본건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u>채무자</u>"는 당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제1항 소정의 약속어음을 새로이 제공 하여야 한다.</p> <p>③ 사채권면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어음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그 보증기한은 당해 사채권의 지급기일까지로 한다.</p> <p>④ "<u>채무자</u>"는 사채상환기일에 이르기까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계속적인 담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u>채무자</u>"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u>은행</u>"은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1조 (재무제표의 제출)</p> <p>"<u>채무자</u>"는 매 결산일 후 2개월내에 그 영업년도에 관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기타 부속명세서)를 "<u>은행</u>"에 제출하며 영업년도중이라도 "<u>은행</u>"의 청구가 있을시에는 "<u>은행</u>"이 요청하는 달의 월말현재 시산표 등 "<u>채무자</u>"의 재무, 손익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로한다.</p>	
--	--	--	--

<p>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p>제5조 중도상환수수료(<input type="checkbox"/>약정함, <input type="checkbox"/>약정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내 "V"표시)</p> <p>① 채무자는 은행에서 인수한 사채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합니다)하는 때에는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식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2. "대출잔여일수"는 중도상환일로부터 당초 약정한 사채의 상환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다만, 사채인수약정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대출경과일수(사채인수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말합니다. 3. "대출기간"은 사채인수약정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대출기간이 3년 초과시 최장 3년으로 계산합니다. <p>② 분할상환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상환금에 대</p>	<p>제12조 (백지어음 제공의무나 보충권 부여)</p> <p>① "갑"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1매를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공동발행 또는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약속어음1매를 제공하기로 한다.</p> <p>②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행사할 수 있기로 한다.</p>	<p>(삭제)</p>	<p>-불필요 조항 삭제</p>
--	---	-------------	-------------------

<p>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며, 먼저 기일도래하는 분할상환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p> <p>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인수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2. 대출잔여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3.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은행이 사채인수대금을 기한 전에 회수하는 경우 4.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5.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 등과 같이 은행과 채무자가 별도 약정한 바에 따라 사채인수대금을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 6. 예, 적금 담보대출(예적금, 금전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 대출)의 경우 7. 기타 은행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p>제13조 (중요사항 통보의무)</p> <p>“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을”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갑”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의 정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변경 3. 영업목적의 변경 4. 재해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의 발생 5.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시 6. 타 회사에 피인수 또는 피합병시 7.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 재평가 착수보고와 재평가 신고시 8. “갑”의 자본금의 5%이상을 타법인에 출자시 	<p>제12조 (중요사항 통보의무)</p> <p>“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은행”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무자”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의 정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변경 3. 영업목적의 변경 4. 재해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의 발생 5.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시 6. 타 회사에 피인수 또는 피합병시 7.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 재평가 착수보고와 재평가 신고시 8. “채무자”의 자본금의 5%이상을 타법인에 출자시 	<p>-번호체상</p>
---	---	--	--------------

<p>제15조 손해배상</p> <p>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채의 발행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채무자는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p> <p>제18조 기본약관의 준용</p> <p>이 약정에 따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기로 합니다.</p>	<p>9. “<u>갑</u>”의 자본금의 20%이상의 차입 또는 기재시</p> <p>10.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p> <p>제14조 (약정의 변경 등)</p> <p>① “<u>을</u>”은 채권의 보전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u>갑</u>”과 협의하여 이 약정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p> <p>②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u>갑</u>”과 “<u>을</u>”<u>간</u>에 상호협의 하여 처리하기로 한다.</p> <p>제15조 (약정의 위반 등)</p> <p>① “<u>갑</u>”이 이 약정서에 약정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반함으로써 “<u>을</u>”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u>을</u>”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 또는 침해된 이익에 대하여 위약 손해금을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위약손해금은 위약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잔여일수에 위약손해금<u>율</u>(연____%)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p> <p>제16조 (기본약관의 준용)</p> <p>사채원리금 상환 및 이자지급채무등 사채인수 관련채무가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조의 대상거래에 포함되기로 하며, 이 약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동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4조(비용의 부담), 제6조(담보),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10조(<u>은행으로부터의 상계</u>), 제12조(어음의 제시, 교부), 제15조(위험부담, 면책조항), 제18조(통지의 효력), 제19조(회보와 조사), 제21조(이행장소, 준거법), 제22조(약관, 부속약관 변경),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를 준용하기로 한다.</p>	<p>9. “<u>채무자</u>”의 자본금의 20%이상의 차입 또는 기재시</p> <p>10.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p> <p>제13조 (약정의 변경 등)</p> <p>① “<u>은행</u>”은 채권의 보전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u>채무자</u>”와 협의하여 이 약정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p> <p>②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u>채무자</u>”와 “<u>은행</u>”<u>간</u>에 상호협의 하여 처리하기로 한다.</p> <p>제14조 (약정의 위반 등)</p> <p>① “<u>채무자</u>”가 이 약정서에 약정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반함으로써 “<u>은행</u>”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u>은행</u>”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 또는 침해된 이익에 대하여 위약 손해금을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위약손해금은 위약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잔여일수에 위약손해금<u>률</u>(연____%)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p> <p>제15조 (기본약관의 준용)</p> <p>사채원리금 상환 및 이자지급채무등 사채인수 관련채무가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조의 대상거래에 포함되기로 하며, 이 약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동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4조(비용의 부담), 제6조(담보),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10조(<u>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u>), 제12조(어음의 제시, 교부), 제15조(위험부담, 면책조항), 제18조(통지의 효력), 제19조(회보와 조사), 제21조(이행장소, 준거법), 제22조(약관, 부속약관 변경),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를 준용하기로 한다.</p>	<p>-번호체상</p> <p>-번호체상</p> <p>-오타 수정</p> <p>-번호체상</p> <p>-오타수정</p>
---	--	--	---

제13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채무자는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부채비율	%	%	%	%	%
자기자본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②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의 양도

③ 채무자는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은 채무자와 은행간에 각 항별 또는 각 목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4조 대위변제 등

① 제3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3자 및 채무자는 은행의 동의를 얻기로 합니다.

②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등 이해관계인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자는 은행과 채무자간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은행의 동의를 얻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은행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은행이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다음에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기로 합니다.

제16조 사채인수계약의 취소

은행이 사채인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소정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사채인수대금의 지급을 중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9조 상환통화 및 환율

외화사채인 경우에 원리금은 사채발행 외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20조 기타 특약사항

(인)

제17조 (기타특약사항)

	(갑)	(인)
--	-----	-----

년 월 일

(갑) _____ (인)

(을)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인)

제16조 (기타특약사항)

	(채무자)	(인)
--	-------	-----

년 월 일

(채무자) _____ (인)

(은행)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인)

-번호체상

사채발행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약정내용과 관련한 여신취급 내용(신규,연장)의 서면통지 생략 여부 : 생략함

생략하지 않음

사채발행

인 (인)

본인의 자서확인	소 속	직 위	성명 (인)
-------------	--------	--------	-----------

수입
인지
첩
부
란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

(을)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갑)	(인)
---	-----	-----

(연대보증인) (인)

(연대보증인) (인)

(은행)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채무자)	(인)
---	-------	-----